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2월 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2.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록표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 조문 삭제 (제 10조 삭제)
- 기록포결제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안 제38조, 안 제46조)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규정 (안 제52조의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절차 (안 제57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안 제57조의2)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안 제57조의3)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2조의2)
-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39조, 안 제6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기록포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는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 제66조에 따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4명 이상으로 의안 발의 정족수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하였으며, 개정 규칙안에서는 조

문을 삭제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p><b>제66조(의안의 발의)</b>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u>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u></p> <p>② ~ ⑤ 생략</p>	<p><b>제76조(의안의 발의)</b>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u>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u></p> <p>② ~ ⑤ 생략</p>

- 안 제38조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본회의의 표결 방식을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기록표결(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불신임 의결, 의원 자격 상실 의결, 징계 의결 및 지방의회에서 하는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예외사항으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p>&lt;신설&gt;</p>	<p><b>제74조(표결방법)</b> 본회의에서 <u>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li> <li>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li> </ol>

	<p>출</p> <p>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p> <p>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p> <p>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p> <p>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p> <p>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p>
--	--

- 안 제52조의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던 것이 삭제된 것으로 권고안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 안 제57조부터 제57조의3까지는 주민청구조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b>제1조(목적)</b>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72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 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3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u>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u>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

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화를 위한 기록 포결 도입과 회의록 공개,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조례 발안 절차 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9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의자: 유승용 의원 외 7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록  
표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 조문 삭제(제 10조 삭제)

나. 기록표결제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안 제38조, 안 제46조)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규정 (안 제52조의2)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절차 (안 제57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안 제57조의2)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안 제57조의3)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2조의2)

바.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39조, 안 제69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중 “법 제65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2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개회) 본회의 개회 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④ (생략)</p> <p>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                      -----.</p> <p>제3조(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p> <p>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72조제1항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법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 및 배부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57조(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  
----- 주민-----  
-----

----.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신 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신설>

----- 법 제  
95조제2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신 설>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

제72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  
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